

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,(안)

의안번호

170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☐ 제안사유

-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침에 의거 행정협의회에 상임자문위원과 비상임자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규약 개정임

☐ 주요골자

- 속초권 행정협의회의 자치 단체별 상임자문위원과 비상임자문위원을 두도록 함 (제10 조의 4 ①)
- 상임자문위원은 의회의원1, 상공회의소장 또는 번영회장 중 1명을 두도록 함(제10 조의 4 ②)
- 비상임자문위원은 학계, 언론인, 관계전문가 중에 필요시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.
(제10 조의 4 ③)

☐ 참고사항

- 속초권 행정협의회 의결록 _____ 별 첨

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(안)

속초시 규약 호

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4 제①항중 '둘 수 있다.'를 '두되 회원 자치단체별 상임자문위원 2명과 상정 안전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촉하는 비상임자문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회장이 위촉한다'로 한다.

제10조의 4 제②항을 다음과같이 한다.

② 상임자문위원은 의회 의원 1명, 상공회의소장 또는 번영회장 중 1명으로 한다.

제10조의 4 제③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③ 비상임자문위원은 학계, 언론인, 관계전문가 중에 필요시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개정안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10조의4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		제10조의4(자문위원) ① ----- ----- 두되 회원 자치단체별 상임 자문위원 2명과 상정안건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촉하는 비상임자문위원으로 하며 협의회 승인을 득한후 회장이 위촉한다.	
② 자문위원은 <u>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, 학계, 언론인,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</u>		② 상임자문위원은 의회 의원 1명, 상공회의소장 또는 번영회장 중 1명으로 한다.	
		③ 비상임자문위원은 학계, 언론인, 관계전문가 중에 필요시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	